

「병역제도 개선」 국무회의 자료 보고

국무회의시(’07.7.10) 국방부장관이 대통령님께 보고드릴 ‘병역제도 개선 (군복무제도·사회복무제도)’에 대한 주요 내용을 요약 보고함

1. 주요 추진경과

- ’06. 9. 18 : 병무청에 「병역자원연구기획단」 구성
- ’07. 2. 2 : ‘병역제도 개선 방안 대통령님 보고 대국민 발표(2.5일)
- ’07. 2. 15 : 총리실 「2+5전략」 추진체계와 연계하여 국방부 「병역제도개선 추진단」 운영

2. 군 복무제도 개선 추진계획

□ 병 복무기간 점진적으로 6개월 단축(’08.1월부터 시행)

- ’06.1월 입대자부터 ’14.7월 입대자까지 8년 7개월에 걸쳐 점진적 단축
 - * 육군·해병대 : 24→18개월, 해군 : 26→20개월, 공군 27→21개월
- 단축 절차는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사항(병역법)으로 ’07.9월 대통령님 승인 추진 예정

□ 유급지원병제 도입

- 의무복무 후 6~18개월간 연장 복무하는 숙련직위(1만명)와 입대시부터 3년간 복무하는 전문직위(3만명)로 구분하여 운용
 - * ’08년(2,000명)부터 2년간 시험운영 후 점진적 증원, 2020년에 4만명 유지
- 보수는 연장복무기간 중 월 120만원(연 1,440만원) 수준 지급
- ’07.6월 임시국회에서 병역법 개정안이 의결되었으며, 기타 법령(군인사법 등)은 ’07.9월까지 정비 완료토록 추진 예정

□ 입대전 기술특기병 양성체계 구축

- 입대 전·입대 후·전역 후 기술인력 협력 육성체계 구축 예정
 - 군에서 필요한 기술인력을 입대전에 맞춤형으로 양성
 - * ‘08~‘10년까지 50개 전문계 고교에서 연간 2,500명 양성 예정
 - 입대 후 유급지원병, 기술특기병으로 활용
 - * ‘08년 항공정비, 건설장비 운전 등 군 기술분야 인력 6,479명 필요
 - 전역시 관련분야에 취업 지원
 - * 「전직교육지원 프로그램」(노동부), 「청년채용 패키지 프로그램」(중기청) 활용
- 「산·학·군 기술인력 협력 육성 MOU」 체결, 전문계 고교 군 관련 특수학과 지정(국방부, 교육부) 등 추진 예정

□ 군 간부비율 증가

- 군 간부비율을 ‘07년 27%에서 ‘20년 각 군별 40% 이상 목표로 확대 추진 예정
 - * 2020년도 신분별 정원 구조

간부 20.5만명 (41%)			병 29.5만명 (59%)	
장교 7만	부사관 13.5만	유급지원병 4만 (하사 2.5만)		
			(병 1.5만)	

□ 군 복무 만족도 제고

- 학점 및 자격증 취득 여건 조성 등 중단 없는 학습 여건 마련
 - * 군 복무 중 학점취득 근거법령 공포(‘07.4월, 고등교육법 제23조) 및 군 교육 기관의 학점을 인정하는 교육과정 확대 추진(‘06년 46개 → ‘07년 58개 추가)
- 장병 인권보장을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 마련 등 병영문화 개선

3. 사회복지제도 개선 추진계획

□ 병역처분기준 조정

- 신체등위 5급은 병역면제였으나 5급 자원 중 사회활동 가능자는 사회복지에 복무토록 하되 복무강도가 낮은 분야에 배치
- 자질 사유로 병역면제 되었던 자원 중 중학중퇴자, 귀화자, 외관상 명백한 혼혈인은 사회복지 부과
 - 단, 수형자(1년6월 이상) 및 고아는 희망시 사회복지 부과

□ 사회복지 활용 분야

- 활용분야는 ① 사회복지 ② 보건의료 ③ 환경안전 순으로 결정
- ‘08년은 분야별 우선순위와 공급 가능인원을 고려 19,000명을 배정할 예정

□ 사회복지 기간·배정·복무관리·교육체계

- 일반 사회복지기간은 22개월(기존 26개월)로 단축하고, 지원분야(공중보건의, 전문요원, 예술체육요원 등)는 현행 34-36개월 유지
 - * 단축시기는 현역 단축시기와 동일하게 ‘08.1월 이후 전역자부터 단축을 적용하여 2014.7월 이후 입대자부터 완전 단축
- 수요부처·지자체·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‘사회복무위원회(국무총리실)·사회복무실무위원회(병무청)’를 두고 분야별·지역별·복무기관별 배정인원 결정
- 복무기관장이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여 기초적인 복무관리 업무를 수행하고, 지방병무청장에게도 복무관리 감독권 부여
- 기초군사훈련 축소(4주→2주), 소양 및 직무교육(2~3주) 실시

□ 대체복무제도 폐지에 따른 보완대책

- 병역특례자 중 예술분야 편입대상을 국제대회 입상자로 한정하되 국악 등 국제대회가 없는 분야는 국내대회 입상자를 인정
- 체육분야는 올림픽 및 아시아경기대회 입상자로 한정
 - * 월드컵·WBC(국제야구대회) 입상자는 폐지
- 전·의경, 경비교도는 '08~2013년까지 매년 감축인원을 감안하여 정원의 30%를 정규직으로 대체

□ 병역이행 관련 소수자(종교적 병역거부자 등)의 사회복무체계 편입

- 병역거부권 인정차원이 아니라 국가의 選兵權 행사를 통해 소수자에 대한 관용 차원에서 검토
- 종교적 사유 등에 의한 병역거부자를 사회복무제도 틀 안에 포함, 병역제도의 완전성 제고
- 판정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별한 후, 사회복무 분야 중 난이도가 높은 분야에서 현역복무기간 2배 수준의 복무 부과
- 사회복무체계 내 특별관리로 철저한 복무관리
 - 복무기관장(국·공립병원장 등)에 복무감독 책임 및 형사 고발 권한 부여
 - 병무청에 복무실태조사 책임 및 형사고발 권한 부여
 - * 11개 지방 병무청에 「사회복무관리센터」 설치·운영('08년 기준 208명)
-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적 공감대 형성, 사회복무제도 법제화에 포함하여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는 대로 시행
 - * '08.12월 이전 사회복무제도 도입을 위한 법제화 추진 예정

4. 홍보계획

□ 홍보중점

- 유급지원병제, 기존 대체복무제도와 다른 점 등을 집중 홍보하여 새로운 제도 도입에 대한 이해 증진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
- 사회복무제도 도입 당위성 및 기대효과 부각으로 법제화 추진을 위한 대국회 등 홍보 강화

□ 홍보방법

- 언론브리핑(D일) : 국무회의 결과 종합 브리핑시 포함 발표
- 국방부, 병무청은 별도 브리핑 실시
- 여론 주도층 대상 정책설명회 개최(D+10일 이내)
* 국회·정당, 정책고객, 시민단체 등
- 일반국민, 병역의무자 및 복지시설 등 수요기관 집중 홍보

※ 정책실과 협조, 국방부(병무청)의 추진사항을 적극 지원하겠음 //끝//